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노원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1. 4.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노원구

목 차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Ⅰ. 재난관리기금

1. 운용계획 변경(안) ····· 7
2. 자금운용 계획 ····· 10

Ⅱ. 중소기업육성기금

1. 운용계획 변경(안) ····· 15
2. 자금운용 계획 ····· 18

Ⅲ. 자활기금

1. 운용계획 변경(안) ····· 23
2. 자금운용 계획 ····· 26

Ⅳ.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 운용계획 변경(안) ····· 31
2. 자금운용 계획 ····· 33

Ⅴ. 옥외광고발전기금

1. 운용계획 변경(안) ····· 39
2. 자금운용 계획 ····· 42

1. 재난관리기금

힐링노원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변경목적

○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 및 각종 재난 대비 등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코로나19 및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자 함.

기금운용 현황

(단위:천원, 2021.4. .현재)

2020년도 말 조성액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 말 조성액	비고
	수입	지출	증감		
124,377	789,000	663,000	126,000	250,377	

계획변경

○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 변경 : 808,370천원 증액(총 1,721,747천원)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780,000천원 증액
- 예치금 회수액 증가에 따른 기존 수입액 대비 32,549천원 증액
- 예치금회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인한 기존 수입액 대비 4,179천원 감액

○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 변경 : 808,370천원 증액(총 1,721,747천원)

-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시설 방역 실시 및 물품 구입 등을 위해 필요한 사무관리비 500,000천원 증액
- 각종 재난에 대비한 방재시설 보수·보강·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비 280,000천원 증액

▸ 예치금 회수 증가(이자감소액 포함)에 따른 28,370천원 및 기존 일반예치금 24,407천원 사무관리비로 편성

○ 항목별 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당 초	변 경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913,377	**1,721,747**	합 계	913,377	**1,721,747**
1. 공공예금이자수입	9,000	**4,821**	1. 사무관리비	265,200	**817,977**
2. 예치금회수	124,377	**156,926**	2.. 시설비	397,800	**677,800**
3. 전입금	780,000	**1,560,000**	3. 예치금	250,377	**225,970**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노원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노원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기금변경 3 차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721,747	913,377	808,370	합 계	1,721,747	913,377	808,370
전입금	1,560,000	780,000	780,000	비융자성사업비	1,495,777	663,000	832,777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156,926	124,377	32,549	예치금	225,970	250,377	△24,407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4,821	9,000	△4,179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기금변경 3 차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4,821	9,000	△4,179	
210 경상적세외수입	4,821	9,000	△4,179	
216 이자수입	4,821	9,000	△4,179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4,821	9,000	△4,179	
				1)이자수입 4,821,000원 - 기정 9,000,000원 = △4,179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16,926	904,377	812,549	
710 보전수입등	156,926	124,377	32,549	
714 예치금회수	156,926	124,377	32,549	
714-01 예치금회수	156,926	124,377	32,549	
				1)기금 예치금 156,926,000원 - 기정 124,377,000원 = 32,549
720 내부거래	1,560,000	780,000	780,000	
721 전입금	1,560,000	780,000	780,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1,560,000	780,000	780,000	
				1)일반회계 전입금 1,560,000,000원 - 기정 780,000,000원 = 780,000
수 입 합 계	1,721,747	913,377	808,370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기금변경 3 차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기정 지출액	비교증감
자치안전과	1,721,747	913,377	808,370
재난방재・민방위	1,721,747	913,377	808,370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	1,495,777	663,000	832,777
재난관리기금(재난관리기금)	1,495,777	663,000	832,777
재난관리기금	1,495,777	663,000	832,777
201 일반운영비	817,977	265,200	552,777
01 사무관리비 552,777	817,977	265,200	552,777
1)주요시설 방역실시 등 817,977,000원 - 기정 265,200,000원 = 552,777			
401 시설비및부대비	677,800	397,800	280,000
01 시설비 280,000	677,800	397,800	280,000
1)재난발생 시 응급복구, 조치비용 등 677,800,000원 - 기정 397,800,000원 = 280,000			
재무활동(자치안전과)	225,970	250,377	△24,407
보전지출(재난관리기금)(재난관리기금)	225,970	250,377	△24,407
여유자금 예치	225,970	250,377	△24,407
602 예치금	225,970	250,377	△24,407
01 일반예치금 △24,407	0	24,407	△24,407
1)일반예치금 0원 - 기정 24,407,000원 = △24,407			
지 출 합 계	1,721,747	913,377	808,370

2. 중소기업육성기금

힐링노원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변경목적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 경영안정화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강화 필요

○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추진계획 (서울시 2021.3.17.)

기금운용 현황

(단위:백만원, 2021.2월말.현재)

합 계	조 성 액		운 용 액			
	출연금(93~2004) 2020코로나 전입	운용수입	융자진행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이자지원 및 홍보비	여유자금
14,413	8,963	5,450	9,303	1,500	114	3,496

※ 2021. 2월말 현재 141개 업체 9,303백만원 융자 진행 중

계획변경

○ 2021년도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신용대출 재원 확보

▸ 재원확보 방법 : 일반회계 전입

▸ 일반회계 전출·기금 전입금 규모 : 1,550백만원

○ 소상공인 저금리 긴급운영자금 지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융자지원

· 출연금(1,600백만원) : 기금출연(1,200백만원) + 은행출연(400백만원)

· 융자규모 : 20,000백만원(출연금의 12.5배수)

· 융자조건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1년간) : 600백만원

▸ 필요재원 규모 및 확보 : 1,550백만원 일반회계 전입

○ 항목별 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당 초	변 경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4,090,544	5,640,544	합 계	4,090,544	5,640,544
1. 예치금회수	1,514,632	1,514,632	1. 민간융자금	3,000,000	3,000,000
2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265,560	2,265,560	2. 출연금	250,000	1,200,000
3 융자금회수이자수입	67,454	67,454	3. 사무관리비	166,100	766,100
4 공공예금이자수입	42,898	42,898	4. 예치금	674,444	674,444
5. 전입금	200,000	1,750,000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기금의 운용 · 관리)

⑦ 구청장은 구 관할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융자를 보증하는 재원으로 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기금의 출연사업) ①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이하 "신용보증"이라 한다)하는 신용보증재원으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출연금을 받는 즉시 출연금 납부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구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 하여야 하며 신용보증은 업체당 5천만원 이하로 한다.

④ 구청장은 재단과 출연금관련 신용보증지원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기금변경 3 차
회계구분 : 중소기업육성기금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5,640,544	4,090,544	1,550,000	합 계	5,640,544	4,090,544	1,550,000
전입금	1,750,000	200,000	1,550,000	비융자성사업비	1,966,100	416,100	1,550,0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3,000,000	3,000,00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333,014	2,333,014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1,514,632	1,514,632	0	예치금	674,444	674,444	0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42,898	42,898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기금변경 3 차
회계구분 : 중소기업육성기금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산 출 내 역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530,192	3,980,192	1,550,000	
720 내부거래	1,750,000	200,000	1,550,000	
721 전입금	1,750,000	200,000	1,550,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1,750,000	200,000	1,550,000	
				1)일반회계 전입금 1,750,000,000 - 기정 200,000,000원 = 1,550,000
수 입 합 계	5,640,544	4,090,544	1,550,000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기금변경 3 차
회계구분 : 중소기업육성기금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기정 지출액	비교증감
일자리경제과	5,640,544	4,090,544	1,550,000
산업진흥・고도화	5,640,544	4,090,544	1,550,000
지역경제활성화	4,966,100	3,416,100	1,550,000
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4,966,100	3,416,100	1,55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4,966,100	3,416,100	1,550,000
201 일반운영비	766,100	166,100	600,000
01 사무관리비 600,000	766,100	166,100	600,000
1)보증수수료 등 766,100,000원 - 기정 166,100,000원 = 600,000			
306 출연금	1,200,000	250,000	950,000
01 출연금 950,000	1,200,000	250,000	950,000
1)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200,000,000원 - 기정 250,000,000원 = 950,000			
지 출 합 계	5,640,544	4,090,544	1,550,000

3. 자활기금

힐링노원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변경목적

○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원지역자활센터 신축건립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변경 운용하여 근로빈곤층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센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기금운용 현황

(단위:천원, 2021.3.29.현재)

2020년도 말 조성액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 말 조성액	비고
	수입	지출	증감		
1,681,491	48,576	301,050	△252,474	1,429,017	

계획변경

○ 노원지역자활센터 신축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

▸ 2020년 자활기금 운용 지출계획에서 노원지역자활센터 신축공사비 600,000천원을 편성하여 361.170천원을 사용하였고, 미사용액 238,830천원이 발생하여 2021년도 지출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함

○ 항목별 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당 초	변 경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1,730,067	1,968,965	합 계	1,730,067	1,968,965
1. 공공예금이자수입	42,000	42,000	1. 사무관리비	51,050	51,050
2. 융자금회수이자	6,576	6,876	2. 민간위탁금	50,000	50,000
3. 예탁금원금회수	1,000,000	1,000,000	3. 시설비	0	238,830
4. 예치금회수	681,491	920,089	4. 민간융자금	200,000	200,000
			5. 예탁금	1,000,000	1,000,000
			6. 예치금	429,017	429,085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 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4.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5.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기금변경 3 차
회계구분 : 자활기금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968,965	1,730,067	238,898	합 계	1,968,965	1,730,067	238,898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339,880	101,050	238,83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200,000	200,00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6,876	6,576	30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1,000,000	1,000,000	0	예탁금	1,000,000	1,000,000	0
예치금회수	920,089	681,491	238,598	예치금	429,085	429,017	68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42,000	42,00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기금변경 3 차
회계구분 : 자활기금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산 출 내 역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46,965	1,708,067	238,898	
710 보전수입등	926,965	688,067	238,898	
713 융자금원금수입	6,876	6,576	300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6,876	6,576	300	
				1)자활지원 융자사업 이자수입 6,876,000원 - 기정 6,5 76,000원 = 300
714 예치금회수	920,089	681,491	238,598	
714-01 예치금회수	920,089	681,491	238,598	
				1)기금 예치금(자활기금) 920,089,000원 - 기정 6 81,491,000원 = 238,598
수 입 합 계	1,968,965	1,730,067	238,898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기금변경 3 차
회계구분 : 자활기금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 · 부문 · 정책 · 단위 · 세부사업 · 편성목	지출액	기정 지출액	비교증감
생활복지과	1,968,965	1,730,067	238,898
기초생활보장	1,968,965	1,730,067	238,898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539,880	301,050	238,830
자활기금(자활기금)	539,880	301,050	238,830
저소득 자활지원	539,880	301,050	238,830
401 시설비및부대비	238,830	0	238,830
01 시설비 238,830	238,830	0	238,830
1)노원지역자활센터 신축 공사비 238,830,000원 = 238,830			
재무활동(생활복지과)	1,429,085	1,429,017	68
보전지출(자활기금)	429,085	429,017	68
여유자금 예치	429,085	429,017	68
602 예치금	429,085	429,017	68
01 일반예치금 68	429,085	429,017	68
1)기금 예치금 429,085,000원 - 기정 429,017,000원 = 68			
지 출 합 계	1,968,965	1,730,067	238,898

4.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힐링노원

2021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2021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변경목적

○ 재활용 정거장 시 보조금 지급 중단에 따른 운영비 확보(129,950천원)

▸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주택가 지역 재활용 정거장 운영 비용 및 관리사 보상금(전액시비)이 서울시로부터 지원 중단됨에 따라 부족분 확보

○ 상계 재활용센터 내부 인테리어 개선 공사 등 비용 확보(100,000천원)

▸ 준공기한 연장 및 설계 변경에 따른 상계 재활용센터 공사비 증액에 따라, 시설 추가 개선 공사에 필요한 비용 확보

기금운용 현황

(단위:천원, 2021. 4. 2. 현재)

2020년도 말 조성액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 말 조성액	비고
	수입	지출	증감		
1,540,000	33,000	165,056	△132,056	1,407,944	

계획변경

○ 변경(증액)금액 : 총 229,950천원

▸ 재활용 정거장 관리사 74명분 10개월치 보상금(기타보상금)

· 74명 × 150,000원 × 10개월 = 111,000,000원

▸ 재활용 정거장 관리사 등 77명분 단체상해보험가입비(공공운영비)

· 77명 × 50,000원 = 3,850,000원

▸ 재활용 정거장 운영 관련 수거함, 마대등 소모품(사무관리비) : 15,100,000원

▸ 상계 재활용센터 추가 공사 관련 비용(시설비) : 100,000,000원

○ 항목별 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당 초	변 경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1,573,000	1,616,680	합 계	1,573,000	1,616,680
1. 재활용판매수입	13,000	13,000	1. 기간제근로자 보수	44,016	44,016
2.공공예금이자수입	20,000	20,000	2.. 사무관리비	41,260	56,360
3. 예치금회수	1,540,000	1,583,680	3. 공공운영비	6,560	10,410
			4. 행사실비보상금	1,020	1,020
			5. 시설비	50,000	150,000
			6. 기타보상금	22,200	133,200
			7. 예치금	1,407,944	1,221,674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벽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그 밖의 소요비용
2.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기금변경 3 차
회계구분 :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616,680	1,573,000	43,680	합 계	1,616,680	1,573,000	43,680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350,990	121,040	229,95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44,016	44,016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1,583,680	1,540,000	43,680	예치금	1,221,674	1,407,944	△186,270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20,000	20,00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13,000	13,000	0	기타지출	0	0	0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기금변경 3 차
회계구분 :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산 출 내 역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83,680	1,540,000	43,680	
710 보전수입등	1,583,680	1,540,000	43,680	
714 예치금회수	1,583,680	1,540,000	43,680	
714-01 예치금회수	1,583,680	1,540,000	43,680	
				1)기금 예치금(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583,680,000원 - 기정 1,540,000,000원 = 43,680
수 입 합 계	1,616,680	1,573,000	43,680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기금변경 3 차
회계구분 :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기정 지출액	비교증감
자원순환과	1,616,680	1,573,000	43,680
폐기물	1,616,680	1,573,000	43,680
자원 순환 행정 서비스 제공	395,006	165,056	229,950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395,006	165,056	229,95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395,006	165,056	229,950
201 일반운영비	66,770	47,820	18,950
01 사무관리비 15,100	56,360	41,260	15,100
1)재활용 정거장 운영 관련 수거함, 마대 등 15,100,000원 = 15,100			
02 공공운영비 3,850	10,410	6,560	3,850
1)재활용 정거장 과리사 등 단체상해보험가입비 50,000원*77명 = 3,850			
301 일반보전금	134,220	23,220	111,000
12 기타보상금 111,000	133,200	22,200	111,000
1)재활용 정거장 관리사 150,000원*74명*10월 = 11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50,000	50,000	100,000
01 시설비 100,000	150,000	50,000	100,000
1)상계재활용 센터 추가 공사 100,000,000원 = 100,000			
재무활동(자원순환과)	1,221,674	1,407,944	△186,270
보전지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221,674	1,407,944	△186,270
여유자금 예치	1,221,674	1,407,944	△186,270
602 예치금	1,221,674	1,407,944	△186,270
01 일반예치금 △186,270	1,221,674	1,407,944	△186,270
1)기금 예치금 1,221,674,000원 - 기정 1,407,944,000원 = △186,270			
지 출 합 계	1,616,680	1,573,000	43,680

5. 옥외광고발전기금

힐링노원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변경목적

○ 동일로, 공릉로 등 에너지절약형LED간판 교체사업 확대 및 광고 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신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변경 운용하여 힐링도시 노원조성과 함께 쾌적한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기금운용 현황

(단위:천원, 2021.3.29.현재)

2020년도 말 조성액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 말 조성액	비고
	수입	지출	증감		
657,848	262,500	343,368	△80,868	576,980	

계획변경

○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증액

▸ 동일로, 공릉로 등 사업 미시행 구역 확대 실시 : 54개소 → 177개소

○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신규사업 지출예산 편성

▸ 근거 : 2020.12월 말 국고보조금 구 기금 계좌 교부 : 26,838천원

○ 항목별 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당 초	변 경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920,348	904,905	합 계	920,348	904,905
1. 증자수입	36,000	36,000	1. 인건비	30,552	30,552
2.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0	20,000	2. 사무관리비	11,016	11,016
3. 이행강제금	6,500	6,500	3. 공공운영비	19,800	19,800
4. 기타과태료	200,000	70,000	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	3,000
5. 예치금 회수	657,848	772,405	5. 민간위탁금	40,000	40,000
			6. 시설비	10,000	10,000
			7.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159,000	466,500
			8.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0	26,838
			9. 기타보상금	70,000	70,000
			10. 예치금	576,980	227,199

▸ 지출계획 세부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편성목(통계목)	변경 사항		
		당초	변경	증감
합 계		920,348	904,905	△15,443
불법광고물 정비 등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552	30,552	-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896	8,896	-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9,800	19,800	-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	2,000	-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불법홍보물부착방지시트설치	10,000	20,000	10,000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고정광고물철거용역비	20,000	10,000	△10,000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0,000	10,000	-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0,000	10,000	-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20	1,220	-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1,000	-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간판철거 및 제작설치 용역비	135,000	442,500	307,500
구민과 함께 하는 간판 정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4,000	24,000	-
주민 참여 불법광고물정비 수거보상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00	900	-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70,000	70,000	-
광고 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광고 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사업	-	26,838	26,838
여유자금 예치	예치금 (예치금)	576,980	227,199	△349,781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기금의 용도)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기금변경 3 차
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904,905	920,348	△15,443	합 계	904,905	920,348	△15,443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647,154	312,816	334,338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30,552	30,552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772,405	657,848	114,557	예치금	227,199	576,980	△349,781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20,000	20,00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112,500	242,500	△130,000	기타지출	0	0	0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기금변경 3 차
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132,500	262,500	△130,000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6,500	206,500	△130,000	
234 과태료	70,000	200,000	△130,000	
234-02 기타과태료	70,000	200,000	△130,000	
				1)과태료 70,000,000원 - 기정 200,000,000원 = △130,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72,405	657,848	114,557	
710 보전수입등	772,405	657,848	114,557	
714 예치금회수	772,405	657,848	114,557	
714-01 예치금회수	772,405	657,848	114,557	
				1) 기금 예치금 772,405,000원 - 기정 657,848,000원 = 114,557
수 입 합 계	904,905	920,348	△15,443	

회계연도 : 2021년
예산차수 : 기금변경 3 차
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기정 지출액	비교증감
도시경관과	904,905	920,348	△15,443
지역및도시	904,905	920,348	△15,443
효율적 공공용지 관리	677,706	343,368	334,338
옥외광고발전기금(옥외광고발전기금)	677,706	343,368	334,338
불법 광고물 정비 등	111,248	111,248	0
307 민간이전	40,000	40,000	0
05 민간위탁금 0	40,000	40,000	0
1)불법 홍보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20,000,000원 - 기정 10,000,000원 = 10,000			
1)고정광고물 철거용역비 10,000,000원 - 기정 20,000,000원 = △10,000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444,720	137,220	307,500
402 민간자본이전	442,500	135,000	307,5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307,500	442,500	135,000	307,500
1)간판철거 및 제작설치 용역비 442,500,000원 - 기정 135,000,000원 = 307,500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사업	26,838	0	26,838
402 민간자본이전	26,838	0	26,838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6,838	26,838	0	26,838
1)광고 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 26,838,000원 = 26,838			
재무활동(도시경관과)	227,199	576,980	△349,781
보전지출(옥외광고발전기금)(옥외광고발전기금)	227,199	576,980	△349,781
여유자금 예치	227,199	576,980	△349,781
602 예치금	227,199	576,980	△349,781
01 일반예치금 △349,781	227,199	576,980	△349,781
1)기금 예치금 227,199,000원 - 기정 576,980,000원 = △349,781			
지 출 합 계	904,905	920,348	△15,443